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

자동대체 약정서

고객은 은행과의 외환거래(수입, 수출, 내국신용장 관련 거래 등)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자동대체할 것을 약정합니다.

제 1조 (자동대체 대상거래 지정)

자동대체 대상거래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,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제2조에서 정한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합니다.

1. 외국환거래(수출거래,수입거래,내국신용장발행거래,내국신용장어음매입(추심)거래)에 의한 결제대금
2. 외국환거래(수출거래,수입거래,내국신용장발행거래,내국신용장어음매입(추심)거래)에 의해 수반되는 수수료 및 비용

제2조 (출금계좌 지정)

고객은 제1조에서 정한 자동대체 대상거래의 결제를 위하여,은행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중 아래 계좌를 출금계좌(이하 " 출금계좌" 라 함)로 지정합니다.

예 금 주	계 좌 번 호	결 제 통 화

제 3조 (자동대체방법)

1. 은행은 고객에 대해 제1조의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**통장, 인감(또는 서명), 비밀번호 없이** 출금계좌에서 대체금액을 인출합니다.
2.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대체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, 은행은 자동대체 대상거래 건별로 출금계좌에서 대체금액을 인출합니다.
3.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자동대체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, 은행은 **고객이 지정한 기간(일별 또는 월별)에 따라** 해당 금액을 계산한 후, **고객과 합의한 정산일에** 출금계좌에서 대체금액을 인출합니다.
4. 은행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금계좌로부터 인출한 경우,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인출금액에 대한 명세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합니다.

제 4조 (신청내용의 변경, 해지 신고)

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과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.

제 5 조 (약정 해지)

1. 본 약정에 의한 자동대체가 1 년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최소 14 일 이전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2. 제1조에서 지정한 원인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은 최소 14일 이전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(면책)

고객은 제 1 조 에 서 지정한 대상거래가 발생하여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인출하였을 경우, 은행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, 은행은 인출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7 조 (언어)

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.

년 월 일

예금주명 (인) 법인인감

* 첨부서류
1. 법인인감증명서
2. 위임장
3. 사업자등록증사본
4. 대리인실명확인증표
5. 출금계획통장사본